

# 가정상담

2023 | 10  
통권 482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을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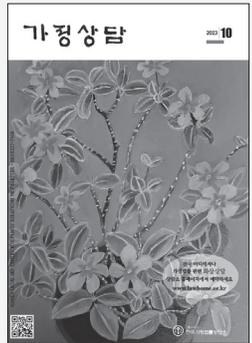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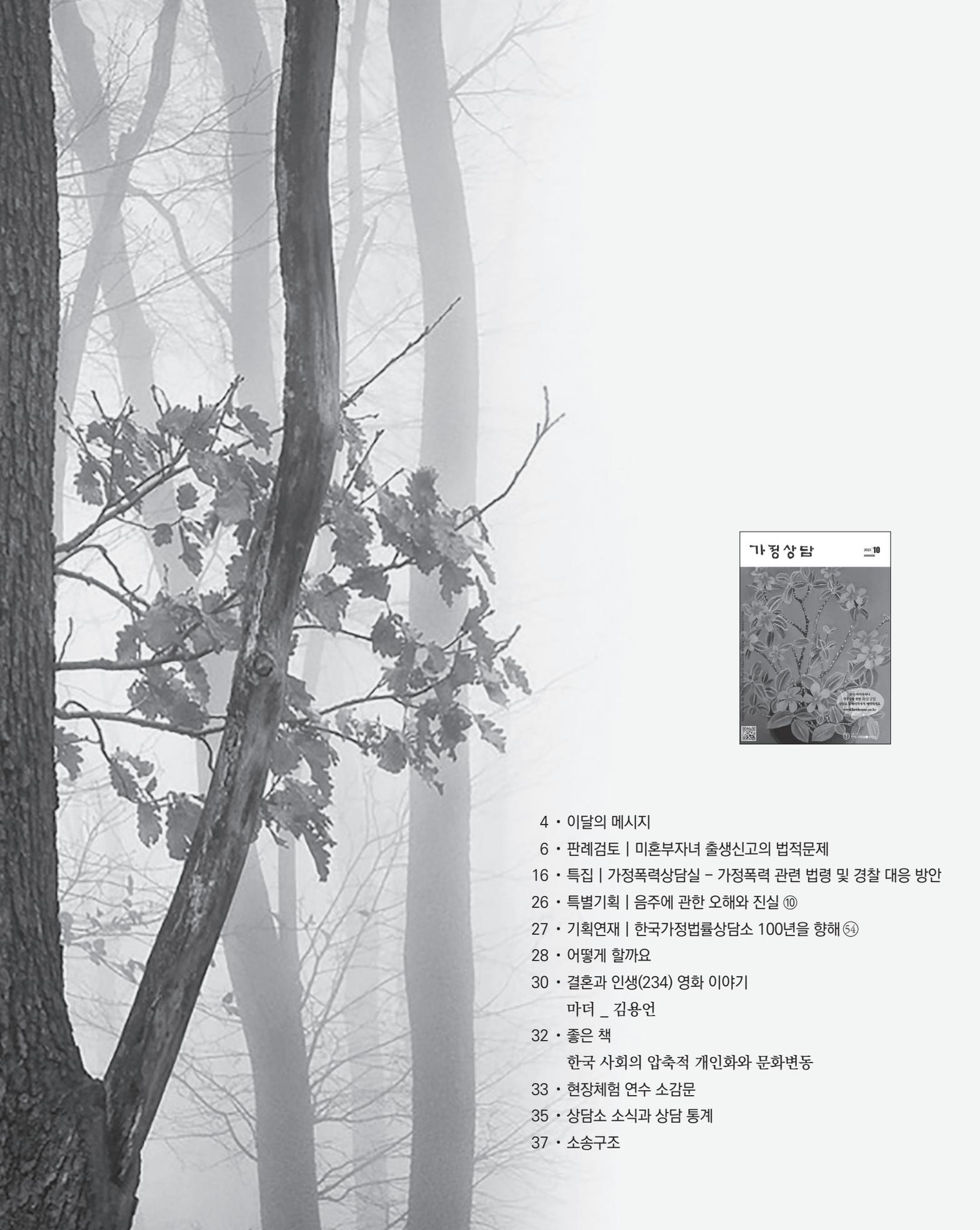
지난 9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개설과목 「리걸클리닉 II」의 수업이 본 상담소에서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 35면)



지난 9월 19일 본소는 서울특별시,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노숙인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본소에서 신용회복교육을 진행하였다. (관련 기사 35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하게 맑게 자신있게!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판례검토 |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법적문제
- 16 • 특집 | 가정폭력상담실 -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경찰 대응 방안
- 26 • 특별기획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⑩
- 27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⑤4
- 28 • 어떻게 할까요
- 30 • 결혼과 인생(234) 영화 이야기  
    마더 \_ 김용언
- 32 • 좋은 책  
    한국 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
- 33 • 현장체험 연수 소감문
- 35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7 • 소송구조

## 참된 의미에서 행복이 구현되는 건강한 가정과 올바른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생각할 때 (1)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마지막에 올려놓은 짐 하나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보인다고 계속 짐을 올리다가 과부하가 일어나 낙타가 쓰러지는 것인데, 끝에 올려놓은 깃털 하나 때문에 낙타가 쓰러졌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자살 사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으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종종 ‘역동적’이라는 말로 수식됩니다. ‘급격한 변화’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이 그렇고 이러한 변화는 가족 관계와 관습 등에도 즉각적으로 때로는 천천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나 문화가 변화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어떤 현실에서도 지켜져야 제대로 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

다 하더라도 구성원 대다수가 올바른 방향성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나 현상은 방향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은 유교적 이념 아래 농업에 기반한 대가족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가족제도는 상당 부분 어머니로 표상되는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유지되었고 이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마냥 아름다워 칭송받아 마땅한 헌신이 아니라 억압적 구조에서 강요당한 희생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빠, 아들로 표상되는 남성 구성원들이 그저 행복하고 편안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쯤이면 대체 무엇을 위한 희생이고, 헌신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급속하게 핵가족 사회로 변화하면서 외형의 변화와 문화와 관습, 가치관의 차이가 맞물리게 되자 가족은 더욱 큰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담소에서 오랜 세월 가부장제 아래 구조적으로 고통을 당해온 여성들의 삶을 자주 접하면서 저도 사회구조에 맞는 핵가족 제도에서 부부 중심의 가족, 평등한 부부가 새로운 가족문화를 이루어 갈 것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미처 성숙하게 뿌리 내리지도 못한 핵가족 제도와 문화 아래 '가족 이기주의'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이기주의'는 자기 가족의 이익만을 중시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은 경시하는 태도나 성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아내나 남편의 원가족도 제외하고 오로지 부부와 자녀만을 의미합니다. 오직 내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아이가 전부라는 인식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가 세상의 중심이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 세상이라는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식의 유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 지도층의 경우 더욱 가족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염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가족 이기주의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고 한 편으로는 비혼주의의 만연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저출생 현상과도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의 가족 이기주의와 저출생이 혼재된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더욱이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들을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아넣는 일부 학부모의 행태는 가족 이기주의의 극단인 동시에 결국은 자녀 학대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현재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붕괴, 희망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미래의 세대가 결국 우리 자녀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오늘의 현실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깊어 가는 가을에 우리 모두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5 결정을 통해 본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법적 문제

### I. 들어가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던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와 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먼저 지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동 규정에 대한 개정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정하였다. 또 하나는 미혼부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2024년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출생정보 통보과정을 통해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동 법의 개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마련이 시급하므로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여러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관해 간략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먼저 미혼부의 개념과 관련하여 미혼부를 통상 미혼모에 대비되는 의미로 본다면, 자녀의 생모와 관계는 파탄되었고 그 자녀를 혼자 힘으로 키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혼인 중인 여성(법률상 배우자와는 대부분 장기 별거 중인

경우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으면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미혼부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의 미혼부란 혼인 외 자녀의 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고(혹은 사망하였고), 미혼부 홀로 자녀 양육 책임을 지며 법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자녀의 모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생모가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을 경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불편함을 겪게 되며 그 때문에 출생신고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양자를 포괄하여 보기로 한다.

### II.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제도의 변화과정

#### 1. 문제의 소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혼인 외 자녀의 모가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법적 장벽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부는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녀는 미등록인 상태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는 이와 같이 동거관계 혹은 남녀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생모가 가출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고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아 자녀의 출생신고가 안된 미혼부가정 상담 사례들이 집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sup>1)</sup> 및 '모든 아동은 출생 후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sup>2)</sup>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녀와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부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호적법 하에서도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니었다. 다만, 모의 성명과 본적, 나이,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서의 기타 사항란에 "모는 성명불상임"이라고 기재하여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구호적 선례들이 있었다.<sup>3)</sup>

그런데 2011년 생부가 생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서의 '법률상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선례<sup>4)</sup>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모 성명불상의 혼인 외자의 출생신고를 부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선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 조항과 가족관계등록 관련 규정들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는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본소에는

2011년부터 모의 성명을 밝힐 수 없거나 모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었고, 본소에서는 무료대서로 '미혼부의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였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출생신고 규정에서는 '모의 성명을 밝힐 수 없는 미혼부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통하여 자녀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미혼부는 관할 법원에 자녀의 '성본창설 허가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이때 유전자 검사서를 첨부하여 자녀와 유전학적으로 생부임을 밝히고, 이러한 신청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였다. 둘째, 성본창설 허가 결정을 받은 후, 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하고, 이때에도 특별대리인선임 결정을 받아야 했다. 셋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받게 되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면, 비로소 미혼부는 관할 관청에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모 기재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각 단계마다 수개월씩 소요되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녀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야 하고, 교육·보건 등의 영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본소 상담사례를 보면, ①미혼부들이 자녀의 나이가 2, 3세가 지나서야 비로소 출생신고 방법을 문의해오는 경우, ②자녀 셋 모두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 ③자녀의 나이가 10대에 이른 경우 등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다.

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4조 제2항.

3) 호적선례 제2-80호(1987. 1. 16. 제정), 호적선례 제2-78호(1989. 5. 8. 제정) 등 참조.

4) 제정 2011. 6. 3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06-2호, 시행]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이 선례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가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가 인지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는 출생사실의 유무 뿐 아니라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인지라는 신분행위의 적부 판단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를 불상으로 출생신고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서의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주 : 모 불상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구호적선례2-77, 2-78, 2-80은 본 선례에 배치되므로 변경함"이라고하여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금지하였다.

## 2.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제도 도입 및 한계

앞에서 보았듯이 법의 한계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2015년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일명 사랑이법).<sup>5)</sup> 이에 따라 생부인 미혼부가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마련되었으나 법원에 따라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적용과 판단기준이 다르고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라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으나, 모가 외국인임이 명백한 경우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나 출생자가 다른 남자의 친생추정을 받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불허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 자녀의 경우에는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절차를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출생자에 대한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

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자녀의 등록부를 작성한 후, 다시 인지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그 사이에 아동의 권리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 3.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2020년 대법원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sup>6)</sup> 이 결정으로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친생자출생 확인 신청을 통해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고 미혼부 자녀의 친생자출생 확인 신청에 대한 종전의 판례상의 제한도 많이 풀렸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신설, 2015. 5. 18. 일부개정.

6)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공2020하,1341]

###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인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언에 기재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개정

2021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가 개정되어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sup>7)</sup> 그러나 자녀의 생모가 타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 ‘친생추정’ 조항과의 충돌이 발생하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여전히 입법적 공백이 존재하였다.

### Ⅲ. 헌법재판소 2023. 3. 23 자 2021헌마975 결정의 개요 및 한계

미혼부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위와 같은 지난한 과정

을 거쳐 개선이 되어왔다. 그러나 ‘자녀의 생모가 다른 남자와 법률상 혼인 중인 경우’에는 친생추정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로 여전히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 1.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 1) 사건개요

###### 가. 청구인들의 관계

(1) 청구인 정○○은 2014. 9.경부터 송○○과 동거하여 그들 사이에서 2015. 9. 4. 출생한 청구인 정□□(출생미신고), 2019. 1. 23. 출생한 청구인 정△△(출생미신고)의 생부이다. 송○○은 남편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정○○과 동거하였고 현재는 청구인 정○○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2) 청구인 김○○은 2019. 11.경부터 김◇◇와 동거하여 그들 사이에서 2021. 4. 27. 출생한 청구인 김□□(출생미신고)의 생부이다. 김◇◇는 남편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김○○과 동거하였고 현재는 청구인 김○○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 7) 법률 제17928호, 2021. 3. 16,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3. 16.>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헌법불합치, 2021헌마975, 2023.3.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들은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3) 청구인 김△△는 안○○과 교제하던 중 그들 사이에서 2021. 5. 20. 출생한 청구인 김▽▽(출생미신고)의 생부이다. 안○○은 남편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김△△와 동거하여 청구인 김▽▽를 출산하였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혼인 외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57조 제1항은 본문에서 생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와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좁게 규정하여, 모가 혼인 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의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생부가 그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다. 생부인 청구인 정○○, 김○○, 김△△는 각자 자신의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 정□□, 정△△, 김□□, 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조항들로 인하여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과 제57조 제1항 단서, 제2항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 정□□, 정△△, 김□□, 김▽▽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생부인 청구인 정○○, 김○○, 김△△의 양육권, 가족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결정요지

### 헌법재판소 2023. 3. 23 자 2021헌마975 결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결정요지

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나.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혼인 중인 여자와 그 남편이 출생신고의 의무자에 해당하나, 해당 자녀의 모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그 남편이 해당 자녀의 출생의 경위를 알고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신고적격자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생신고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이들이 혼인 외 출생자의 구체적 사정을 출생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청구인들과 같은 경우 출생신고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생래적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모와 자녀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을 미리 수집하고, 그 정보를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민법상 신분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는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모는 출산으로 인하여 그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형성되는 반면에, 생부는 그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은 모를 중심으로 출생신고를 규정하고, 모가 혼인 중일 경우에 그 출생자는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의 체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은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나아가 입법자는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적 부자관계의 형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일차적 책임과 재량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25.5.31.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헌법재판소 2023. 3. 23 자 2021헌마975 결정의 한계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행 출생신고제도가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점에서 그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도록 하면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심판대상 조항들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 심판 청구에서의 출생신고 문제는 민법상 친생추정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문제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열어두지 않아 실효성 있는 입법 개선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는다.<sup>8)</sup>

혼인 중인 여자와 법률상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기간 내에 모나 모의 법률상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sup>9)</sup> 출생신고가 된 경우 그 아동은 부부의 자녀로 등재되고, 자녀의 등록부상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자녀의 생부는 비로소 인지를 통해 부로 등재될 수 있다. 그런데 통상 혼인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법률상 남편이 아내의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혼인 중인 여자가 법률상 남편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낳고 자녀의 생부와 관계가 단절하였다면 그 자녀는 생부가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신고 기간 내에 모나 그 법률상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생부가 생래적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방안으로 인지의 효력이 없는, 곧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법적으로 밝힐 수 없는 출생신고 방법을 제시한 것은 친생추정 제도와 모

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정을 도모한 점에서 한계가 있고, 많은 문제들을 미루어 놓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부로서는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출생신고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타인과 법률혼 중인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는 민법의 '친생추정 조항' 개정 논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해결방안 모색은 공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아동의 부모에 관한 정보는 아동을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부모에게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전히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및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가 제한되고 생부의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IV.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검토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을 간단히 검토해 본다.

### 1. 출생통보제 시행과 관련한 검토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3(출생사실의 통보)의 신설로 2024. 7. 19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하면,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기간(1개월)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신고를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 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sup>10)</sup>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출생한

8) 송효진,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법개정 관련 쟁점, 미혼부자녀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23.8.25.), p.10.

9)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10)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모든 아동의 출생정보가 등록되게 되므로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지연도 많은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출생신고를 신고 의무자가 하게 되므로, 미혼부인 생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4조의 4에서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sup>11)</sup> 특히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대법원규칙 개정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출생통보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알기 어려우나 직권 신고 부분은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2. 출생신고에 의한 등록과 부, 모 확정 사안의 분리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부 혹은 모 미정의 출생신고의

경우 수리만 하고 특종신고서류 편철장 내지는 불수리 신고 서류 등에 편철하여 두고 가족관계등록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출생신고에 의한 등록과 부 혹은 모 확정 사안은 분리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sup>12)</sup> 출생등록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기재사항은 미정인 채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친자관련 재판 등을 통해 추후 보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출생통보제의 시행으로 병원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출생통보를 통해 출생신고 절차를 밟게 되며, 이것은 자녀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부 혹은 모의 기재가 미정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 3. 민법의 친생추정 제도<sup>13)</sup> 개선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출생한 미혼부 자녀의 출생등록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자녀의 모가 다른 남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미혼부가 자녀의 부로 기재가 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시행일: 2024. 7. 19.] 제44조의3

11)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4.7.19. 시행)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12) 송효진, 앞글, 12~13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 의무자에 생부를 추가하도록 한다고 해도 여전히 친생추정 조항과는 충돌한다. 따라서 미혼부가 자녀의 부로 기록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것인데, 현행법상으로는 타인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생부는 인지를 할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생부는 자녀의 아버지로 기재되기 어렵다. 자녀가 생모의 법률상 남편의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생부가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게 될 수 있다. 결국 자녀가 생모의 남편의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제도의 개선 없이는 생부의 출생등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결정 대상인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를 포함하여 친생추정 제도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에 대해 제안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혼인한 여성과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민법 제854조의 2)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청구의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출생신고가 안 된 자녀에 대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친생추정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출생신고를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이 존재한다. 개정을 통해 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한다면 친생추정 조항 및 친생부인 소송과의 경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가 소송사건이 되고 어떤 경우가 비송사건인지 이론의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출생통보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 2) 규정을 삭제하고 청구권자에 생부도 포함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은 과학적 증명방식에 의한 친생추정 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친생추정을 완화하여 자녀의 출생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개정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고려될 수

있다.

### 1)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배제 규정 마련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민법 제844조 제3항), 유럽의 다수 국가들에서는 이혼 후 출생한 자녀는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있다(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sup>14)</sup>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혼 성립 후 출생한 자녀는 부가 없는 상태가 되며, 출생신고를 할 때에도 부가 기록되지 않고 부자관계는 임의인지나 부를 정하는 재판을 통하여 창설된다. 우리 민법상 혼인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2015년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친생부인 허가 청구(제854조의2)와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들 규정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모가 혼인중이 아닐 것이 요구되는 등 매우 좁은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한계가 있다.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위 기간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생부에게 친생부인권 인정<sup>15)</sup>

현행 민법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부 또는 처만이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고적격자의 범위에 생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는 자녀와 모, 법률상의 부로 구성된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생부가 인지의 의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부가 친생부인

13) 현행 친생추정조항은 혼인중에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한다(민법 제844조).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혈연이 일치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경우 모 또는 남편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제846조, 제847조),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14) 상세한 내용은 김상용, 친생추정에 관한 쟁점,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자료집(2019.10.18.), pp.25~3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참조.

15) 생부의 친생부인권에 관해서는 김상용, 앞글, pp.67~71 참조.

의 소를 제기하고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생부에게 친생부 인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3) 유전인자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해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방안

#### (1) 하급심 판례의 변화

하급심 판결 중에는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생한 자녀와 모의 법률상 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들이 있다.<sup>16)</sup> (판례에 따르면) 동서의 결여로 부의 자를 포탈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더 과학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는 유전자 검사 등에 의하여 부의 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까지 그 추정이 미친다고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일부 하급심 판결은 유전자 검사에 의하여 부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생자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본 상담소 소송구조사건에서도 “친생자 추정 및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은 1958. 2. 22. 구민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것인바, 이는 부성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처의 부정행위가 드물었던 시대적 배경 하에서 불확실한 개연성에 기반을 둔 것인데, 과학적 친자 감정기술의 발달과 혈액형 또는 유전자형의 배치에 대한 감정을 통해 친생자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은 친생자추정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혈액형 또는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친

생부인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건들이 있다.<sup>17)</sup>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실정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원고적격자와 제소기간의 범위가 넓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의 성격상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기간의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아내와 아내의 남편이 가정을 유지하면서 아내의 혼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례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수 있다<sup>18)</sup>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위 판례들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타개방안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생부가 인지의 의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자녀의 모 또는 그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생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를 인지하여 부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혼부 가정과 그 자녀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직은 하급심에서 드물게 나오는 판례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판례의 해석론이 확장된다면 친생추정 조항은 완화되어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법 개정에도 탄력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2)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식에 의한 친생추정 배제 제한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40호, 2023.3.10.)에서는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지 아니한 때에도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844조 제4항 신설).<sup>19)</sup> 위 법안과 함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동법 제47조에 「민법」 제

16) 서울가정법원 2015.7.21. 선고 2014드단310144 판결;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17)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87 판결 등.

18) 김상용, 앞의 글, pp.35~38 참조.

19)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의 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제846조(자녀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제1항의 경우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44조 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지 아니한 때에도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같이 발의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안은 본소가 2013년에 법 개정을 시도한 바 있었다. 본소에서는 미혼부 가정을 포함하여 친생추정 조항으로 인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고통받는 사례들이 집적됨에 따라 친생추정을 완화 내지 배제하기 위한 방안 모색 중 내부 논의를 통해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생부와 자녀의 혈연이 일치할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자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였다.<sup>20)</sup> 주요 내용은 “혼인 중 포태<sup>21)</sup>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라도 혈액형 및 유전자인자의 검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친생추정을 배제 한다”(민법 제844조 제3항 신설)는 것과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신설) 등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입법방식은 친생추정 제도와 친생부인 제도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잠탈하는 것으로 현행 민법 체계와는 조화가 불가능하고 자녀복리와 가정의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제외국에서도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와 그 남편 사이에 혈연이 배치되는 사정은 친생추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V. 결론

헌법재판소 2023. 3. 23 자 2021헌마975 결정에서는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과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개선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사건이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와 관련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을 제시하지는 않은 한계가 있다.

현행 친생추정 규정은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모가 혼인

중에 임신, 출산한 자녀의 아버지는 모의 남편이다”라는 이념이 반영된 친생추정 규정은 자녀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혈연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도록 하는 점도 거의 일관되고 있다. 친생추정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는 논리나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해 혈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자는 제안 모두 자녀의 복리가 핵심이다. 과학적 방법 등에 의한 친생추정 배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현행 친생추정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친생추정 적용을 완화하거나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자와 제소기간의 범위를 확대하여 친생추정의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미혼부처럼 인지의 의사를 갖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이 장애가 되어 자녀의 아버지로 등재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좀 더 간이하고 분명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자녀의 복리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상 추정을 반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친생추정 배제 규정의 입법화 검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법이론 정립 및 조문 구성에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한편 생부의 친생부인권 인정과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배제 규정 마련 등은 법리적인 문제나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여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미혼부 가정을 비롯한 친생추정 제도의 장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 본소 요청에 따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작성. 2013. 9. 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내부자료집.

21) 혹은 “혼인중 출생한”.

## 특집

### 가정폭력상담실

#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경찰 대응 방안

가정폭력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거나 가정폭력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적절한 업무 처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서울경찰청에서는 2023년에 서울 각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고위험 관계성 사건 피해자 보호 지원 등 학대예방경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각 2회, 총 4회기(4/17, 5/15, 8/31, 9/12) 직장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본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경찰 대응방안”을 주제로 4회 강의하였다. 이하에서는 그 강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 I.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및 법 시행 성과

### 1.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배경

헌법은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은 헌법과 모든 법률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유교적 가부장제의 의식과 관습이 뿌리 깊었던 우리나라의 가정과 사회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해온 여성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고, 형법에 의한 가정폭력 구제의 가능성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990년대에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로 가정폭력규제법 제정 움직임이 태동, 결실을 맺었고, 국외적으로도 여성폭력을 인권문제로 인정받으려는 운동이 힘을 얻게 되었다.

#### 1) 1990년대

- 여성들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던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 가정폭력 규제에 대한 국제기준이 제시되었다. (1995년 북경여성회의의 행동강령 등)

- 여성폭력 제거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가정폭력규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 2) 1995년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임이 부과되었다.

#### 3) 1996년

- 199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 각 정당에서는 법안을 제출하여 심사에 들어갔다.

#### 4) 1997년, 1998년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997년 12월 13일 제정, 1998년 7월 1일 시행)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년 12월 31일 제정, 1998년 7월 1일 시행)

## 2. 가정폭력관련법 시행 성과

### 1) 긍정적 평가

- 가정폭력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아졌다.
- 신체적 폭력이 감소했다. (부부간 신체적 폭력발생을 2000년 34.0%, 2019년 3.7%,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이 체계화되었다.

### 2) 부정적 평가

-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았다.
- 가정폭력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 이에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 II.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정폭력방지법)

### 1) 가정폭력방지법

- 제1조(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담지원, 신변보호(쉼터), 의료지원, 주거지원, 법률구조 지원, 취업지원 등

### 2)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

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2020. 6. 9. 개정, 본호 신설)

### 3) 가정폭력상담소가 하는 일(가정폭력방지법 제6조)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 아동)을 임시로 보호,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

\* 이 중 제2호와 제4호의 임시보호는 3일 이내이어야 하나 상담소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 4) 보호시설의 종류(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 2 제1항)

1.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2.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
3. 외국인 피해자를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외국인보호시설 (2020. 6. 9. 개정, 시행)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장애인보호시설

#### \* 보호기간 연장(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단기보호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등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절의 장은 본인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각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두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보호 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피해자의 치료보호(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

-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치료보호의 내용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그 밖에 대통령령(제6조)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 ①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②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 ③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치료
-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위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Ⅲ.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1)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제1조)**

- 형사처벌 절차의 특례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 가정폭력범죄를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다(2014. 1. 28. 개정/ 2014. 9.29. 시행)

**2) 가정폭력의 정의(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정구성원(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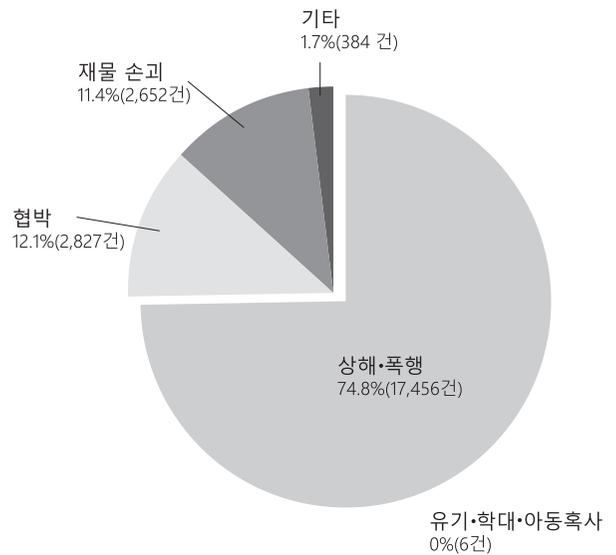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4)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유기, 학대, 아동 학사, 체포, 감금,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2020. 10. 20. 개정, 2021. 1.21. 시행) 등의 죄에 해당하는 죄이다.

**5) 가정보호사건 죄명별 접수건**

(사법연감 2022:2021년도 통계)



가정보호사건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 언어적, 정서적 폭력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 경제적 폭력, 통제 등은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7) 최근 개정 폭력처벌법의 주요 내용

### ■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임시 조치의 실효성 강화

(동법 제63조 제2항, 제3항 신설, 2020. 10. 20. 일부 개정, 2021. 1. 21. 시행)

- 개정 전에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었으나
- 개정 후에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강화되었고 상습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다.

### • 판결례 ① 2022.2.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위반), 특수협박, 감금,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대 남성)는 평소 누나 B에게 집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2021.7. B를 폭행,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퇴거, B의 주거와 직장 100미터 이내 한 달간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 기간 중 A는 B를 폭행, 협박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담당경찰의 요구에 화가 나 B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숨기고 흉기로 협박하여 약 13시간을 감금하였다가 B가 격정대 찾아온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여동생까지 협박하였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친누나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재범의 우려가 높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를 양형에 반영하였고, 폭행과 협박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다.

### • 판결례 ② 2022. 3. 울산지방법원

이혼한 아내에게 사흘간 100여 차례 연락하여 접근금지 보호처분 불이행,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 남성)은 2021. 6. 이혼한 아내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법원이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결정했는데도 사흘간 115회에 걸쳐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앞서 아내 집에 들어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았고 문이 잠겨 있을 때에는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현관을 두드리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 유죄 판결 선고/ 약식명령 고지 시 수강, 이수명령 병과 가능 (동법 제3조의2, 제63조제4항, 2020. 10. 20. 개정, 2021. 1.21. 시행)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 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 후 형사처벌 된다.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 판결례 ③ 2022. 2. 인천지방법원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 남성), 2020. 1. 아내 B의 얼굴을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B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2021.11. 별거 중인 아내 B가 운영하는 음식점 출입문에 시멘트 등을 던져 부순 혐의로 기소되어 이후 인천지방법원에서 B의 주거지인 해당 가게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사흘 후 다시 해당 가게에 찾아갔다.

이에 법원에서는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는 과거 B에 대한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B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면서도 B가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

(동법 제40조 제1항 제6호, 2022. 12. 13. 개정, 2023. 6. 14. 시행)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을 하는 시설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 및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8) 보호처분 : 가정폭력처벌법

###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1항

1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40시간을 기본단위로 80, 120시간 등을 명할 수 있음(경우에 따라 20시간)  
· 보통 하루 8시간씩 일주일간 평일에 이루어짐  
· 프로그램이 구분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수강명령 가능

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부과, 단독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병과. 치료위탁,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과하는 경우도 있음.  
· 행위자가 생업 문제로 수강명령 또는 상담위탁 이행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미한 병행이지만 향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기도 함.  
·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준수사항 기재(음주 제한 또는 개별적 치료 행위 확인)

6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전국 법원별 치료위탁 기관 리스트  
· 7호 처분은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시설 내 처우)를 모두 포함하므로 치료의 형태는 수탁기관이 전문가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8호.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전국 법원별 상담위탁 기관 리스트  
· 상담위탁 기관은 출석 편의를 위해 가능한 현 주거지 인근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임.

\*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9) 위탁 비용 : 가정폭력처벌법 제48조 (비용의 부담)**

① 제29조 제1항 제4호(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및 제6호(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 제1항 제7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및 제8호(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10) 불처분 결정 :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항 제2호) : 송치기관인 검사(또는 형사법원)에게 되돌려 송치 또는 이송한다.

· 법원 기준례

①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② 행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행위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 집행 중인데 이 사건 가정폭력사건이 그 보호처분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기존의 보호처분으로 보호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경우

④ 범행이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행위자에게 폭행전력(형사처벌 또는 공소권 없음)이 없으며 처벌 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범행 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⑤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미 이혼이나 별거 의사가 확고하여 가정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보호처분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달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다만 추후 자녀 문제로 만나야 할 가능성이 있거나 행위자에게 가정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보호처분 결정함이 적절)

\*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법이 정한 보호처분(사회봉사 80시간)을 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08. 8. 12. 자 2008어5 결정 있음.

- ⑥ 피해자가 보호처분 보다는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2호 불처분 고려. (단 폭행이나 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하였다가 가정보호 재판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불처분 및 송치하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므로 보호처분을 고려)
- ⑦ 가정보호 사건의 인적, 물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호 불처분)
- ⑧ 행위자에게 보호처분 이행가능성이 없어 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처분 취소 및 검사 송치 결정의 예상이 분명한 경우(2호 불처분)

#### 11) 가정보호사건 운영 현황(사법연감 2020~2022)

2019년	2020년	2021년
<b>23,139건 중 13,360건 처분(57.7%)</b>	<b>19,715건 중 11,355건 처분(57.6%)</b>	<b>19,321건 중 10,483건 처분(54.3%)</b>
1호 접근행위제한 58건(0.5%)	39건(0.4%)	31건(0.2%)
2호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39건(0.0%)	1건(0.0%)	2건(0.0%)
3호 친권행사 제한 - (-)	- (-)	- (-)
4호 사회 봉사, 수강명령 3,056건(13.2%)	2,890건(14.7%)	2,208건(11.4%)
5호 보호관찰 1,843건(8.0%)	1,610건(8.2%)	1,357건(7.0%)
7호 치료위탁 103건(0.4%)	168건(0.9%)	116건 (0.6%)
8호 상담위탁 5,751건(24.9%)	4,719건(23.9%)	4,803건(24.9%)
4호·5호 병과 1,278건(5.6%)	923건(4.7%)	1·5호 병과 26건(0.1%) 4·5호 병과 822건(4.3%)
5호·8호 병과 605건(2.6%)	520건(2.6%)	594건(3.1%)
<b>불처분 9,578건(41.4%)</b>	<b>8,128건(41.2%)</b>	<b>8,603건(45%)</b>

####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9헌바43, 종국일자2023. 2. 23.)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 ○○○부터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부 ○○○에게 청구인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우편에 의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하여 줄 것을 청구, 법원은 ○○○에게 6개월 동안 청구인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
- 이에 청구인은 ○○○이 청구인을 협박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우편이나 소포를 청구인의 직장 및 주거에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

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 '가정폭력처벌법' 제 55조의2 제1항에서 우편에 의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9.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심판대상

-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30. 법률 제12877호로 개정, 2020.10.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12. 30. 법률 제1287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결정주문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7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의견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에 법원의 신속한 권리보호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피해자와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의 긴급성, 광범성,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치분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접근행위가 형법상 협박죄 등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는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고지나 동행영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등 실무상 민사 또는 가사 신청사건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특성,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성질과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불합치의견

-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비교하여 볼 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거나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덜 받는다고거나 그러한 접근금지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거나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 합헌의견은 피해자가 가치분을 통하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보

호명령의 경우 법원이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접강제만 가능한 가치분과는 구별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차이가 없다.

-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인 바, 합헌의견과 같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결정의 의의

-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최초의 사례.
-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이고 재판관 5인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인)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 선고.

\* 2023. 4. 24.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국회 제출

## IV.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상담

###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에 맞추어 그에 부응하는 상담 등 지원을 한다.

피해자의 욕구는 대체로 1)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2) 혼인관계 유지,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 및 폭력 재발 방지 → 3) 혼인관계 해소 순이다.

##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70여년간을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가정문제 전문법률구조기관으로 축적한 경험과 가족문제 및 한국가족의 특성을 감안한 상담을 진행하며, 특히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특별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으로 법제도 내에서 더욱 체계적인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 경찰서 의뢰  
(가정폭력 관련자 법률상담 등 2015~2022)  
총 326건  
2015:86건/2016:63건/2017:17건/  
2018:11건/2019:26건/2020:48건/  
2021:28건/2022:47건

- 가정폭력행위자 수탁 상담 현황(1998~2022)  
상담위탁 보호처분 3,130건(94.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182건(5.5%)  
총 3,31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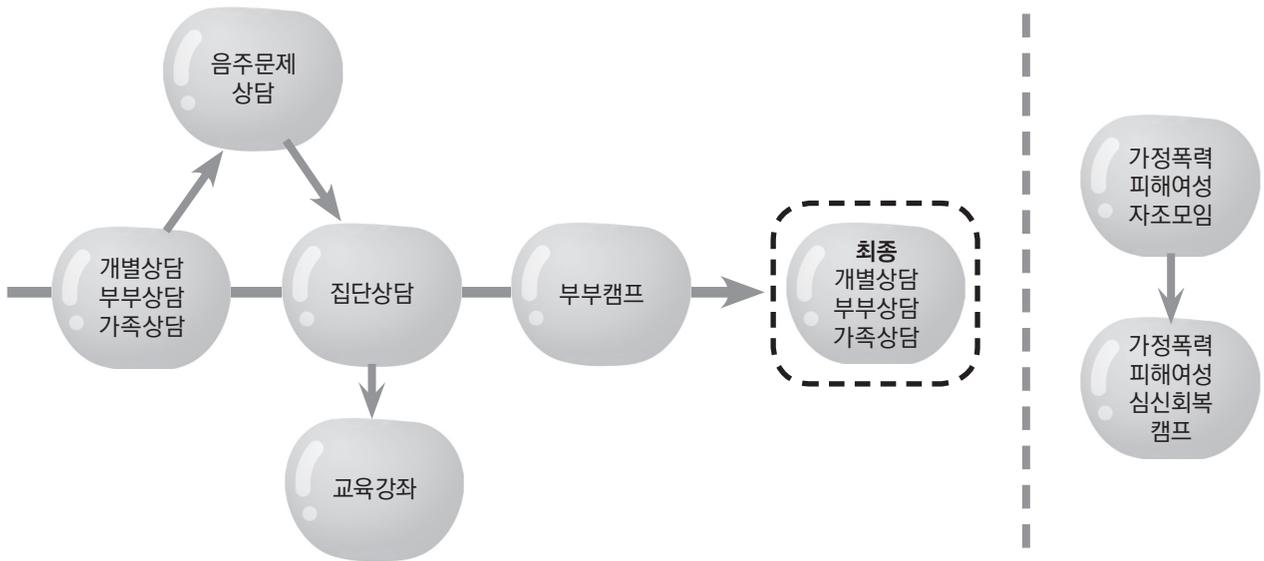
- \* 2020 기준  
전국가정폭력상담소 211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상담소 108개

## 3.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목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의 목적은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법적 제재를 이행하도록 한다. 둘째, 폭력을 중단하고, 폭력 성행을 교정하며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비폭력대화법, 감성이해, 음주문제 점검과 개선, 정신건강, 나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 피해자와의 관계재정립 등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통해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4.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프로그램

- 개별/부부/가족상담, 음주문제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부부/가족 상담 등
- 총 6단계로 구성, 폭력요인에 따라 단계별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6개월 기준 표준 상담 횟수 20회, 상담 시간 60시간으로 탄력적 맞춤형으로 운영 한다.

- 상담자 : 본소 상담위원과 사회복지학 교수, 음주문제, 분노조절, 대화법,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등
- 행위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단계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 비대면 상담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여 2020년 9월부터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집단상담, 교육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 5. 가정폭력 상담 효과성

상담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상담 효과성을 조사 결과한 폭력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었고, 행위자 상담이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에도 효과적이었다.

### V. 경찰 대응 방안

-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시 인적, 물적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욕구에 부응하는 기관과의 연계에도 유의해야 한다.
- 가정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 입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023. 4. 10. 뉴스 기사에 의하면 제주경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또 폭행한 폭력남편에 대해 상담위탁 결정을 받아들였다.
  - 2023. 7. 18. 사법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에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위탁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상담 참석 이전과 상담 종료 이후의 폭력 발생률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

항목	상담 참석 이전		상담 종료 이후	
	행위자 보고 폭력발생률 명(%)	피해자 보고 폭력발생률 명(%)	행위자 보고 폭력발생률 명(%)	피해자 보고 폭력발생률 명(%)
언어폭력	117(100)	117(100)	60(51.3)	80(68.4)
경미한 신체폭력	97(82.9)	110(94.0)	13(11.1)	36(30.8)
심한 신체폭력	39(33.3)	81(69.2)	8(6.8)	22(18.8)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특별기획

### 음주문제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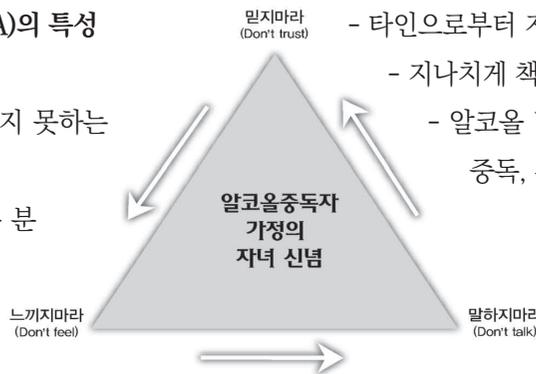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10)

##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어려움

가족 내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적개심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사회적 공격성이 높으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 사이에 비정상적 의견 불일치가 많고, 학교에서 약물남용과 같은 많은 행동문제를 나타내며, 친구들과 싸우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알코올 중독자 미성년 자녀(COA)의 특성

- 과도한 책임감으로 즐거움을 갖지 못하는 작은 엄마 역할
- 낮은 자존감, 높은 적대감, 높은 분노감,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
- 부모의 비밀관적인 태도로 인



- 해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기 어려움
- 부모의 음주행위를 축소하거나 부인함으로써 음주행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됨
- 우울, 불안, 위축, 공포, 과다행동
- 충동통제를 잘 못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함, 학습장애를 보임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족체계에서 자라나 성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잔류된 상태에서 성인아이(Adult Children)가 되는데, 이들은 아동기에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지나치게 일찍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과도한 책임감을 보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등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등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가면서까지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사회생활의 유형을 보이는 등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기도 하며, 대인관계에서 의존적인 성향이 높고, 사람을 불신하며,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사회적 관계상에도 문제를 보입니다.

### ●알코올 중독자 성인자녀(ACOA)의 특성

- 지나치게 사람을 경계하여 친밀한 대인관계유지에 어려움
- 통제 불가능한 변화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임
- 진실을 말하기 쉬운 때조차도 거짓말을 반복함
- 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인정과 확인을 받고자 함
- 지나치게 책임감을 갖거나 지나치게 무책임함
- 알코올 및 약물사용, 섭식장애, 관계의존, 섹스 중독, 완벽주의와 같은 의존장애를 가짐
- 가정폭력예방지침서 ②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서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시리즈의 하나로 2006년부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음주문제상담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운영 및 가정과 미래사회 준비사업 (3)

2005년 6월 ~ 서울시 지원 '위기가정 SOS' 사업 실시

### \* 가정해체 예방 및 건강가정 기능 강화 사업

####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상담 지원

##### 1. 이혼 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이혼 및 심각한 부부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혼 전후 상담과 연계하여 개인별, 부부별, 집단별로 이혼 전에 고려해야 할 경제적, 법적, 심리적, 사회적, 자녀문제 영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가족 복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단계별로 상담과 연계하여 교육 및 합의서 작성과 화해조서 작성, 소송서류 대서까지 도와주는 일관된 프로그램이다.

##### 2. 가족심화상담

개인 및 부부 그리고 기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검사와 심화된 상담 프로그램 관련 교육과정을 사례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여 개인과 가정문제에 더 역동적으로 대응해 보고자 한 상담 심화 프로그램이다.

#### 가족생활주기별 생애교육 프로그램 운영

##### 1.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및 캠프

재혼을 원하는 이들이 더욱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혼의 문제를 바라보고 재혼 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김포효원문화센터에서 '행복찾기 가족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집단상담 및 레크리에이션, 강의를 비롯해 함께 참가한 자녀들에게도 전문가가 미술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2. 노인프로그램 - 문화체험 및 노인네트워크 형성

노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고립으로 인해 심신기능이 저하되고 이것이 대인관계의 소외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행복하고 보람있는 노년을 위한 상호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생애주기적 차원의 프로그램이다.

2005년 10월 5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신청을 받아 경기도 고양시 중남미문화원과 동두천 지구촌 민속박물관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 ■ 가정법률상담사례 | 이혼 ②

### ● 이혼 시 결혼에 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Q** 문 80 |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 6개월 정도 사귀고 결혼했으나 남편이 거짓말을 많이 하여 다툼이 잦다가 결국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아서 결혼한 것 같아 재산분할과 위자료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과 예물 및 예단 비용 등을 모두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의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결혼식 비용 등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Q** 문 81 |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 때문에 고민 끝에 결혼생활 1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함께 노력해서 모은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 나누어 달라고 하니깐 한 톨도 못 준다고 합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그동안 살림만 한 주제에 무슨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혼 당시 단

칸 월세방에서 시작하여 남편의 박봉으로 생활하면서 집을 마련하느라고 저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 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나요?

**A**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못(부정행위, 폭행 등)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843조, 제806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 ■ 인터넷 상담

**Q** 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지인이 추천한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미숙한 까닭에 임대료 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일용근로를 전전하며 힘겹게 생활하던 중 방문판매 사업인 이른바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 초기에 소득을 꽤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제가 속한 다단계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하면서 저는 또다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직난에 시달려 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기관의 도움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작년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에서 해방된 저는 다시 근로활동을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려 했는데, 최근 법원에서 온 한 통의 등기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내담자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한 것에 대한 판결문이었으며, 상대방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누락이 되었던 채권자였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로 아직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의욕상실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준비할 때 성실하게 임하였고, 모든 채권자를 목록에 넣었다고 생각하였으나 누락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억울한 경우에도 양수금 판결내용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상환을 해줘야만 하는 것인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됩니다.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만이 위와 같은 범위로 제한되므로 개

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로써 개인채무자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여 파산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등 참조).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채무자가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단지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면책된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미 면책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의 면책 주장 여부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일부 파산채권자에 대해서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되어 집단적·포괄적으로 채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면책 사실도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참조).

전규선 상담위원

## 마더

감독 봉준호

출연 김혜자, 원빈, 진구, 문희라



읍내 약재상에서 일하는 엄마(김혜자)는 아들 도준(원빈)과 단둘이 산다. 얼굴은 말끔하게 잘 생겼지만 약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어 어수룩하기 짝이 없는 아들은 엄마의 전부이자 가장 큰 걱정거리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여고생 아정(문희라)이 살해당하고 당시 근처를 지나던 모습이 목격된 도준이 체포된다. 엄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지만,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짓고 변호사는 돈만 밝힌다. 결국 엄마는 진범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선다.

〈마더〉는 봉준호 감독의 전작 〈살인의 추억〉의 거울상과도 같은 영화다. 눈 닿는 곳마다 황갈색 눈발이 펼쳐지고, 좁은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의 면면은 뻔하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비밀 같은 건 없다. 치매 걸린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고생이 딸이라도 구하기 위해 성매매에 나서면 ‘남자 없으면 잠도 못 자는 애’라는 소문이 어린 중학생

들 사이에서도 짝 퍼진다. 그 여고생이 살해당했을 때도, 시체는 마을 어디서나 눈길이 닿는 건물 옥상에 걸쳐졌다. 마을 누구라도, 마을 어디서라도 그 시체를 볼 수 있고, 죽음에 대한 소문이 퍼질 수 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걸 보면 분명 배경은 21세기지만, 마을 전체에 퍼져 있는 분위기는 자못 전근대적이다. 마치 1980년대 ‘살인의 추억’에 잠겨 있던 전작의 그 마을처럼. 경찰은 여전히 무능하고, 여자들은 쉽게 폭력의 제물로 바쳐진다. 범인을 잡긴 했는데, 진짜 범인이 맞는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대신 여기서 시선의 주체는 (〈살인의 추억〉처럼) 경찰이 아니라 범인으로 몰린 청년의 엄마다. 한국 사회에서 작고 나약해 보이는, 가난한 중년 여성은 가장 취약하고 무시당하는 존재다. ‘어머님’이라든가 ‘여사님’이라는 호칭은 최소한의 걸치레일 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남자들 전부는 엄마를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인 양 취급하며 그의 얼마 되지 않는 돈과 낡은 육체마저 공공재인 것처럼 착복하려 든다.

그렇다고 젊은 여자들의 삶은 다른가? 살해당한 여고생 아정이 빈곤과 성적 학대에 시달리며 보잘 것 없는 청춘 시절을 이 악물고 견뎌내던 모습은, 어쩌면 영화 속 다른 중년 여성들의 과거였을 수 있다. 〈살인의 추억〉에서처럼 〈마더〉의 젊은 여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살해당하거나, 착취하는 시선들과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입술들로부터 어떻게든 살아남아 도망칠 궁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마더〉의 엄마는, 한약재가 가득 쌓이고 여기저기 늘어진 어둡침침한 약재상 저 안쪽에 자리 잡고 앉아, 약재를 썩둑 썩둑 자르는 작두를 움직이면서 유리문 바깥의

고맙습니다

## 2023년 9월 자원봉사자

###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진, 박선화, 유문숙 님

###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 대학생 자원봉사

이고은, 박인아, 김지오, 류채현, 이지민, 이재영, 김상은, 이현아, 전해미, 정재은, 김영인, 한아름, 김지원, 이은세, 고원진, 전승희, 박진희, 손세민, 이주현, 서민지, 남계목, 최성은, 안예빈, 강민서, 서혜린, 조은수, 한승현, 김민주, 최신양, 김정민, 홍준화, 서유진, 이해원, 김민선, 김예지, 최지현, 송유립, 하유지, 이유정, 김혜진, 이준호, 임현지, 방승현, 최준영, 이동희, 원서영, 최문경, 손예린, 장주원, 문정현, 신영혜, 전성희, 고세현, 박민제, 최민서, 정의현, 김성은, 문시원, 원지수, 김연주, 김선옥, 한봄이, 노현정, 김다솔, 서현진, 나단비, 이양현 님

세상을 관찰한다. 이곳은 엄마의 정글이고 동지이며 함정이다. 가장 약한 짐승은 상대방이 방심할 때 순식간에 튀어 오르며 반격을 가할 수 있다.

2009년 작 <마더>는 이후 특히 한국 TV 드라마(동시에 최근 사회면에 오르내리는 학교 관련 사건들)에서 쏟아져 나온 엄마-자식 간의 관계를 선취한 것과 다름없다. 자식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 엄마는, 엄마라면, 어떤 짓까지 저지러 수 있는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윤리와 사회적 규범의 한계를 부숩버리는 유일한 핑계인가. 너무나 당연시되는 모성에 대한, '정상' 가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집착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엄마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저버리며 "내 아들을 왜 미워해!"라고 포효하지만, 아들의 결백을 맹목적으로 믿는 그 억울한 심정은 때로 스스로 옳아매는 족쇄가 된다.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살인의 추억>의 질문이 <마더>에 이르면 "부모님은 계시니? 엄마, 없어?"로 바뀐다. 인간의 조건, 혹은 인간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이 질문들은 한국 사회의 가장 비천한 음지를 향한 배제와 차별의 논리로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다. 범인을 찾기 위해서 나섰을 뿐인데 정작 그 떨리는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돌아올 뿐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맞닥뜨리는 <마더>는, 어쩌면 개봉 당시보다 요즘에 다시 봤을 때 더 무시무시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 후원 고맙습니다

###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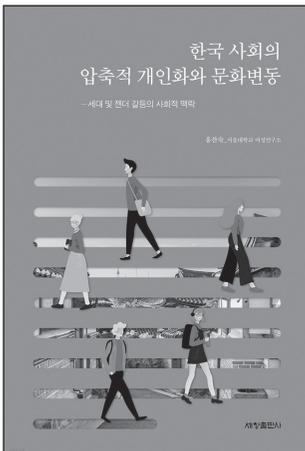


## 한국 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

- 세대 및 젠더 갈등의 사회적 맥락

홍찬숙

세창출판사, 2022 (초판 1쇄)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고대의 장수들은 혼자서도 가뿐히 돌을 들어 적에게 던졌지만,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두 명이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

위의 말은 기원전 1,700년 경의 것이라는 수메르 점토판에 남은 내용이라는데, 여기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버릇없다고 훈계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두 번째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의 한 구절이고, 소크라테스나 중세 시대 수도원의 학자가 ‘공부 안 하는 요즘 애들’에 대해 탄탄하는 구절도 전해진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조지오웰의 다음과 같은 말이 될 것이다.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다음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믿는다.”

이처럼 모든 세대는 갈등하고 이해하면서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이란 인류 역사의 한 유산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과 젠더 문제는 참여함을 넘어 전쟁 같은 양상이어서 염려스러울 정도다.

이러한 현실을 다룬 책 『한국 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에서 저자는 ‘사회변동’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문화변동과 정치변동을 압축적 개인화라는 한국 사회 특유의 근대화 경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저자는 본인의 지도교수였던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개인화 이론에 기대어, 서구와는 다른 고유한 방식의 ‘압축적 개인화’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의제보다 문화변동과 정치변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계급연대가 약화하고 개인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세대별, 성별 ‘차이들’, 즉 문화변동의 문제로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즉 ‘차이’의 문제는 단순한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평등과도 관련된 것으로 이 책에서는 ‘압축적 개인화’의 사회변동, 문화변동의 문제를 세

대별, 성별 ‘차이’의 문제와 연관해서 다루고 있다.

예컨대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다음과 같은 요약은 현재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즉 산업화의 성공으로 뒤늦게 나타나는 청년세대의 개인화는 산업화 및 민주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며, 세대 갈등의 주요한 요인은 근대 ‘정치적 사회통합의 핵심인 도덕적 다원주의를 ‘도덕적 일체감(집단주의)’으로 무장한 기성세대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서구의 순차적 개인화와 한국의 압축적 개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전근대적 가부장제의 지배에서 해방을 꾀하는 근대적 ‘자유’의 주체가 서구에서는 시민계급 남성이었으나, 한국에서는 현재 청년여성들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여성들은 서구의 페미니즘 담론에 의지하면서 성불평등을 구조적인 사회문제라고 인지하는 반면, 청년남성은 이를 개인 간의 인성문제로 인지하는 경향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은 정치적 요구로 공론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크고, 남성은 온라인의 개별적 공간에서 불꽃이 발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의 예를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집 남매에게서 그대로 본다.

염려스러운 것은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기성세대와 정치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대와 젠더 갈등을 무시하거나 나아가 조장하는 일련의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 홍찬숙은 독일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대학 사회학과에서 이론사회학, 젠더사회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이론사회학회 부회장이고,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강사이다. 『울리히 벡 읽기』, 『개인화』 등 다수의 저서와 『자기만의 신』 등 다수의 역서가 있다.

이숙현 편집부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여름방학 동안 본소에서 현장체험 연수를 마친 대학생들의 소감을 심는다.

### 박진희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과에 재학하면서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들었지만 이론으로만 법률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실제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의 현실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1학기에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지만,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기여하고 싶어서 여름 방학기간 중 8월 한 달 동안 현장실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전화하시는 내담자들에게 상담소를 소개하는 등의 간단한 안내 정도만 하였지만 전화업무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혼, 가정폭력, 양육비 등 가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담자분들이 정확한 법률자문을 원하면서 또한 누군가가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시길 원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단한 안내와 상담소 방문 권유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안내와 충분한 공감을 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출장 상담실에서 상담참관을 하면서 내담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 드리면서 소장과 진술서 등의 작성을 도우며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찾아오신 분들이 직접 활용할 서류라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미숙한 부분들이 많아 여러 번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내담자분들은 한결같이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해주시는 모습에 나중에도 법적인 도움

이 필요한 분들 가까이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야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도서실 업무와 기타 상담소 업무 즉 상담소 일지작성, 상담통계 입력이나 상담 및 치료경과서 작성을 실습하면서 상담소의 업무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담 및 치료경과 보고서 작성 연수를 통해 가정폭력으로 상담명령 받으신 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상담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상담을 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사건들을 정리하면서 간접적으로 상담소에서 진행했던 법률구조 사례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에서 연수하는 동안 변경된 가족법 판례 등 제가 몰랐던 법률적 지식을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뜻깊었지만 무엇보다도 실제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으면서 저의 삶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법을 몰라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실력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서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전공

처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현장체험연수를 왔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법학 전공이 아닐뿐더러 법학적 지식이 거의 없었기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이루어지는 전화업무, 교육부 업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각종 상담소 업무가 힘들게 느껴졌지만, 그때마다 어떤

자세로 이해하 할지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 상담위원을 연결해드리고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는 전화 업무, 그리고 법률구조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작성하는 일들은 예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도 그랬지만, 익숙하지 않은 업무들이 주어 지니 연수 초기에는 많이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연수를 하는 실습생들과 함께 차근차근 함께 도우며 알아가고, 부족한 저를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하나하나 업무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업무 수행 중 법률적 지식도 늘어갔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연과 상황의 내담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개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감정들을 배제하고서라도, 미래의 법조인을 희망하면서 어떤 마음가짐들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시는 상담위원분들을 보며 막연히만 가졌던 미래에 대한 생각도, 제가 어떠한 진로로 나아가든, 조금 더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경험은, 그러한 점에서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 다 은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두 달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전화상담연수, 법률구조연수, 교육프로그램 보조 진행연수, 상담 참관 연수 등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소에서 연수를 진행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무료대서 작성, 양육비 청구 관련 상담 참관, 가정폭력 피해자 진술서 작성 등 상담소 업무를 진행하며, 봉사의 즐거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실습생분들과 모르는 것을 서로 물어보며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에서 근무하며 느낀 점들을 잊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 2023년 9월 상담통계

<b>총 건수 5,018</b>			
<b>법률상담 (4,098)</b>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1,022	2,944	84	48
<b>화해조정</b>	<b>소장 등 서류작성</b>	<b>소송구조</b>	
745	31	144	

• 인터넷 정보 이용 94,234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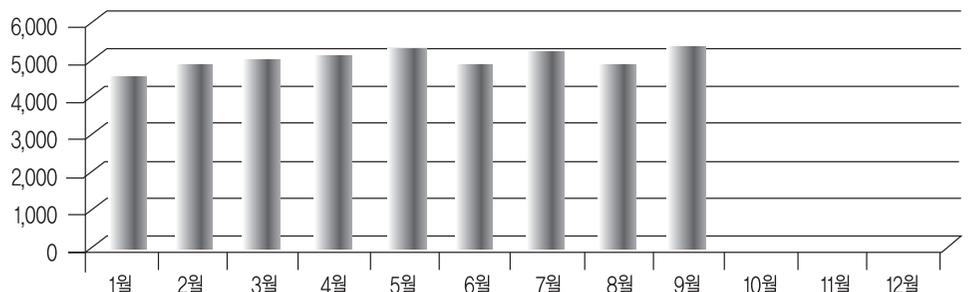
2023년 9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018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098건(81.7%), 화해조정 745건(14.8%), 소장 등 서류작성 31건(0.6%), 소송구조 144건(2.9%)이었다.

법률상담 4,09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3년 8월에 비해 위자료·재산분할(5.6%→7.9%), 양육비(7.5%→9.4%), 인지(1.1%→1.8%), 입양(0.9%→1.1%), 혼인무효·취소(0.4%→0.5%), 유언·상속

(6.7%→7.6%), 친양자(0.3%→0.5%), 개명(0.6%→1.0%), 성변경(1.0%→1.1%), 미성년후견(0.6%→2.2%), 성년후견(1.6%→2.6%), 가사기타(18.5%→19.3%), 임대차(0.1%→0.2%), 파산(1.5%→2.7%), 형사기타(0.5%→0.6%), 형사절차(0.1%→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09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22건(24.9%), 전화상담 2,944건(71.8%), 인터넷상담 84건(2.1%), 순회상담 48건(1.2%)이었다.

2023년  
월별  
총건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갈 클리닉 II」 개강

9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개설 과목 「리걸클리닉II」의 수업이 본 상담소에서 진행되었다. 본 과목은 민간단체로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인 본 상담소에서의 상담 참관과 가사 소송관련 서류 검토, 사례분석 등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습득하고 리갈 마인드를 함양하며 법률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의 구체적 내용은 강의, 법률상담 참관(본 상담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내 본 상담소 상담실), 상담참관 사례 발표와 토론 및 강평으로 구성되며,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과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공동대표)가 팀칭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날 수업에서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학생들을 맞이하여 본 상담소를 소개하고 '가족법의 변화 : 가족법 제·개정사 및 과제'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관련 사진 2면)

### 본소, 노숙인 시설 실무자들 대상

#### 신용회복제도 교육 실시

서울특별시,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9월 19일 본소는 서울특별시,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노숙인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본소 8층 강의실에서 신용회복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은 본소의 전규선 상담위원이 공적채무조정인 개인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에 대해 강의하였고, 이어서 신용회복위원회 박선호 전문강사가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사적채무조정에 대해 강의하였다.

본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에 입소하거나 도움을 받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더 쉽게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9월22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으로 부부갈등에서 가장 큰 정신과적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의심, 의처증과 의부증,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인데 이번 강좌에서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들과 그 질환으로

인한 문제점,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까지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신질환 환자가 이를 인지하고 가정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즉,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정신병적 의심과 피해망상을 가진 환자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치료를 받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정적인 부부관계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10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 9.6./13 부산시거점센터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대상 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9.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가족법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9.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가족법교육  
- 김진영 상담위원

####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 ●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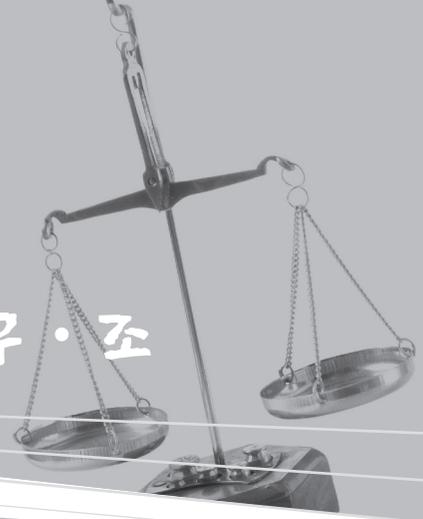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9월 11일 본소 광배희 소장의 유동수 국회의원 면담에 배석하였다. 15일에는 이화여대 리갈클리닉 II 수업에서 ‘법률구조의 이론과 실제-가족법 개요’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22일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에서 주관하는 ‘범죄피해자원스톱 지원매뉴얼’개정을 위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피해자 지원절차 및 내용 관련 회의에 서면 자문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9월 8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 II 수업에서 본 상담소를 소개하고 ‘가족법의 변화 : 가족법 제·개정사 및 과제’를 주제로 강의하였으며(2면 사진), 15일 동 수업에서 ‘상담참관 및 상담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7일과 14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11일에는 본소 광배희 소장의 유동수 국회의원 면담에 배석하였다. 12일에는 서울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 및 기타 내근 직원 대상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실무과정 직장교육에서 “가정폭력관련 법령 및 경찰 대응방안”을 주제로 2회차 강의를 하였다.

#### 광배희 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면담

광배희 소장은 지난 9월 11일 국회를 방문하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과 상담소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사기피해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100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2021년경 용접 및 철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1톤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다. 그렇게 공사를 이어가던 중 자재 대금 및 임금, 연장 구입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인테리어업자의 요청으로 2022년 1월경 지인 2명에게 사채를 빌려 쓰게 되었다. 그러나 인테리어업자는 공사대금을 치르지 않고 잠적해 버렸고, 사기를 당한 신청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길거리 노숙을 시작하였다. 2022년경에는 당뇨병과 고혈압, 녹내장 악화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고, 쉼터의 도움으로 시설에서 무상거주를 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에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7.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건명 : 인지청구 등

**내용 :** 원고(여, 20대)는 피고(남, 30대)와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어 2020.12. 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수차 피고에게 임의인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미루어 원고는 인지 및 양육비, 친권자, 양육자 지정, 성본 계속 사용 청구 등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및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았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피고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족관계 유무 확정을 위하여 법원에서 수검 명령을 하였으나 소송 관련 서류의 송달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이에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공시송달로 판결을 내렸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2023. 8. 9.)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700만 원, 장래 양육비로 2023.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공시송달에 의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 성본 계속 사용 청구 인용

법률구조 2021-1-317

담당 : 이영임 변호사

### 오랜 기간 지속된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장기 별거에 이른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3-1-159

담당 : 공영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0대)는 피고(남, 70대)와 1970년대에 혼인 신고를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오랜 기간 지속된 피고의 외도와 폭력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2014년 2월경 피고가 술을 먹고 들어와 원고를 폭행하자 원고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가 접근금지조치를 받아 이후 10여 년간 따로 살게 되었다. 2023년 3월경 서로 연락이 되어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같이 살자고 폭언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심정으로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2023. 8. 14.)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3-1-153**

**담당 : 이상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2011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1, 2, 3을 두고 있다. 피고는 코로나 발생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를 폭행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 또한 피고는 2021. 6. 말경 사건본인 2가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도끼비방망이로 사건본인 2를 때렸다. 7월경에는 원고가 끊여준 라면이 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같은 도구를 원고에게 집어 던지며 원고를 사건본인들과 함께 쫓아냈다. 11월경에는 사건본인 2가 피고 자신을 보고 무서워하며 도망쳤다는 이유로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건본인들과 함께 쉼터에 입소하여 이혼 등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 8. 10.)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원고의 위자로 청구를 기각한다.
-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4.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3.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본인 사업 채무를 전가하고 자녀들에게 부양료까지 청구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3-1-18**

**담당 : 이수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0대)는 피고(남, 70대)와 법률상 부부로서 사이에 성인 자녀들이 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사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입었는데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자녀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지 못하여 가족들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2012년경 거주하던 집을 팔게 되면서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별거 이후 서로 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은 거의 없었다. 최근 피고는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자녀에게 월 300만 원의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된 원고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본 사건이 제기되자 피고는 부양료 청구를 취하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23. 9. 7.)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023년 10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0월 23일, 11월 13일, 11월 27일, 12월 휴강)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3년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대면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10월 26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3일	부부대화법

##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4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등지고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10월 11일	존재를 삼킨 타인의 시선, 불안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월 8일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충동, 불안조절장애	
12월 13일	갈망에서 시작된 절망, 중독장애	

##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4년 1월 16일(화)~18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혼인 관련 법률/이혼관련 법률/부모·자녀 관련 법률/후견 관련 법률/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 우리 가족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4년 8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